

심사결과 요약서

공 사 명 : 2015년 불량맨홀 정비공사(연간단가)

(단위 : 원)

구 분		요청내용	심사내용	증 감	비 고
순 공 사 원 가	재 료 비	직접재료비	32,283,369	31,723,414	-559,955
		간접재료비	0	0	0
		작업부산물	0	0	0
	소 계		32,283,369	31,723,414	-559,955
	노 무 비	직접노무비	29,693,148	29,628,723	-64,425
		간접노무비	3,236,553	3,436,931	200,378
		소 계	32,929,701	33,065,654	135,953
	제 경 비	운 반 비	0	0	0
		기계경비	4,182,970	4,252,970	70,000
		산재보험료	1,251,328	1,256,494	5,166
		고용보험료	286,488	287,671	1,183
		건강보험료	504,783	503,688	-1,095
		연금보험료	739,359	737,755	-1,604
		노인장기요양보험료	33,063	32,991	-72
퇴직공제부금비		0	0	0	
산업안전보건관리비		0	0	0	
기타경비		4,043,210	4,081,711	38,501	
환경보전비		595,435	590,445	-4,990	
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		324,181	321,465	-2,716	
				0	
			0		
소 계		11,960,817	12,065,190	104,373	
계		77,173,887	76,854,258	-319,629	
일반관리비		4,630,433	4,611,255	-19,178	
이 운		7,427,498	7,460,851	33,353	
				0	
				0	
[공 급 가 액]		89,231,818	88,926,364	-305,454	
부가가치세		8,923,182	8,892,636	-30,546	
[도 급 액]		98,155,000	97,819,000	-336,000	
이전비		1,845,000	1,845,000	-0	
				-0	
[총공사비]		100,000,000	99,664,000	-336,000	

※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통신비, 세금과공과, 도서인쇄비

주요 심사내용

☑ 공 사 명 : 2015년 불량맨홀 정비공사(연간단가)

☐ 사업개요

위 치	성북구 관내
공사개요	맨홀정비 : 138개소
공사기간	계약일로부터 ~ 2015.12.31

☐ 심사평가 결과

(단 위 : 원)

설계금액	심사금액	증감액	증감율(%)
100,000,000	99,664,000	-336,000	-0.34

☐ 주요 심사내용

구 분	심 사 요 청	심 사 결 과	검토의견
총괄 내역서	○간접노무비요율 : 10.9% ○기타경비 : 6.2%	○간접노무비요율 : 11.6% ○기타경비 : 6.3%	조달청 발표 2015년 상반기 토목공사 제비율 적용 (연간단가공사는 공사기간 6개월 이하 적용)
재료비	○총전재(알루미나시멘트+규사):1,050원 ○폴리머결합재(아크릴수지):6,250원 ○SMT기층용골재(기층용혼합골재):200원 ○SMT표층용결합재(표층용폴리머결 합재):9,500원 ○컨테이너(창고3*6*2.6):2,200,000원	○총전재(알루미나시멘트+규사):605원 ○폴리머결합재(아크릴수지):3,320원 ○SMT기층용골재(기층용혼합골재):165원 ○SMT표층용결합재(표층용폴리머결 합재):8,470원 ○컨테이너(창고3*6*2.6):1,932,000원	물가정보1-311 물가정보1-311 물가정보1-311 물가정보1-311 조달청가격정보

☐ 기타사항

○ 주민참여 감독관 등 청렴계약 음브즈만 시행 철저 (감사담당관-3566)

• 3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과정에 「주민참여감독관」 의무 지정 및 참여 (붙임3 참조)

○ 준공 시 물량 검토 및 정산 철저

○ 연간단가 계약공사는 작업지시에 따라 계약금액이 확정되므로 작업지시를 가능한

1회당 4천만원 이하로 작업지시 및 정산 조치

(단, 1건당 4천만원 이상으로 작업지시가 불가피한 공사는 예외로 하되 설계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)

※ 2013년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순회점검 지적사항(환수)이므로 정산 철저

○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 이행 철저

1. 주계약자 공동도급제

- 적용대상 :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종합+전문업체로 구성되는 공사
- 시행방법 : 종합 +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

2. 하도급표준계약서사용

- 적용대상 :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 전부
- 시행방법 : 하도급 계약시 「하도급 표준계약서」 사용 추진

3. 하도급직불제

- 적용대상 :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 전부
- 시행방법 : 종합, 전문건설업체가 직불을 합의한 경우 발주자 직접지급

4. 하도급대금 지급예고 알림판 설치 및 SMS문자 전송

5.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철저

6. 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부조리 근절 공한문 발송

○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시행 철저(<http://cws.kiscon.net/main.aspx>)

○ 통합공사관리시스템 입력 철저(<http://pmis.eseoul.go.kr/Main/Welcome.action?cmd=normal>)

○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행

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63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대상 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331호 【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】을 적용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계상하여 발주하시기 바랍니다.